

영등포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3. 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2. 16.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7.12.2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08.7.9)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각 구 단위 간관시범사업 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정구역 지정 시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함.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0조·제34조, 별표 3)**
 -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 관련 별표 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서 전주·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함.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표출비율은 같아야 하며,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자치단체 광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0조)**
 -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함.
 -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는 ①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 ②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③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함.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시행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4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6)**

-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함.

●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간관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양천구 · 동작구 개정 중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7.12.2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08.7.9)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 안 제10조 · 제34조 · 별표 3에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였고,
- 안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여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 안 제30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 · 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 안 제33조에는 광고물 설치 ·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5조·별표 6에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안 제37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에서 2008.12.22을 광고물 실명제 시행일로 하도록 법 제16조에서 조례에 위임되고, 법 제20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2008.12.22을 기준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및 과태료 금액 상향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등 이 제도가 정착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2009.1.22 ~ 2.11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관련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3. 2.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07.12.21>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

⑥ 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4.12.23]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4.12.23, 2007.12.21〉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1.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1.7.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1.7.2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1.7.2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1.7.2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2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 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2.5.30, 1997.2.6, 1999.2.26, 2000.7.1,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 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2.6, 1999.2.26, 2005.6.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8.7.9〉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8.7.9〉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 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에 한한다.〈개정 1992.5.30,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
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6.23〉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8.7.9〉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1. 삭제 〈2008.7.9〉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
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
게시대
 5. 그 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 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2005.6.23, 2008.7.9〉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8.7.9>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개정 2001.11.22>) ① 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2.6, 2000.6.23, 2001.11.22, 2005.6.23>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 처리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999.2.26, 2001.11.22, 2005.6.23>

1. 삭제<2008.7.9>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2001.11.22>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2008.7.9>

1. 삭제 <2008.7.9>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11.22, 2005.6.23>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7.9>

③ 삭제 <2008.7.9>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별표 4] <개정 2008.7.9>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 관련)

| 위 반 사 항 | 과 태 료 |
|---|--|
| <p>1. 법 제3조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한 자</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나. 현수막</p> <p>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p>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p>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 <p>·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p> <p>·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p> <p>·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p>·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

| | |
|--|--|
| 4) 1)부터 3)까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라. 전단 | 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 2항 및 제 3항에 따 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제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 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 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4.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
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